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면담 자료집

2013. 5.



목 차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원장 면담계획	1
2.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간담회 시나리오	3
3.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일정	5
4.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약력	8
5. 인권옹호자 좌석배치(전원회의실)	9
6. 위원장님 말씀자료	10
7. 국가인권위원회 소개자료	12
8. 예상 질의 및 답변자료	27
1) 인권옹호자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소개	27
2) 사설경비업체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방조 관련	28
3) 촛불집회와 시민단체 탄압 관련	29
4) 인권옹호자 탄압 - PD수첩 관련	30
5) 인권옹호자 탄압 - 한진중공업관련 김진숙씨 긴급구제	32
6) 인권옹호자 탄압 - 기무사 사찰피해자 인권침해	33
7) 용산 화재사건 관련	34
8) 용산 철거대책위 활동가의 구속 기소 관련	35
9)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현장 관련	36
10) 천안함 관련 UN 문제제기에 대한 수사 관련	37
11)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강제송환 관련	38

12)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및 강제송환 관련	39
1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관련	40
14) 인권옹호자 탄압관련 진정을 무기한 연장	41
15) 밀양 송전탑 관련 인권위의 대응	42
16) 2010년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위 농성시 단전, 난방중단	43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설명자료

1. 유엔 인권이사회 설명자료	45
2. 특별절차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설명자료	47
3. UN 1998년 인권옹호자 권리책임 선언문	49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개인진정 사례	57
5. 참여연대 인권옹호자 보고대회 요약보고	6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면담계획 및 의제자료

2013. 5.



국가인권위원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원장 면담계획

□ 개 요

- 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5.29(수) ~ 6.7(금) 간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기간 중 위원장, 상임위원, 광주지역사무소와의 면담 주선 요청
- 면담 일시 : 5.29(수), 14:00~15:00
- 면담 장소 : 전원회의실 (13층)

유엔 특별보고관

- 특별보고관은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라고도 불리며 특정 인권문제나 상황을 연구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정보 수집·보고
-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인권이사회 의장이 선임
- 현재 49개의 특별절차가 있으며 36개는 주제별 임무를, 13개는 국가별 임무를 맡고 있음.

□ 논의 희망 의제

- 각 기관별 인권옹호자 보호 관련 제도 조사 및 현황
 - 1998년 채택된 인권옹호자 권리·책임 선언의 국내 이행 현황
 - 인권옹호자 보호 관련 국내 사법제도 현황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국내 현황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제기된 우리 국민의 개인진정 관련 내용
 - 이주노조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08.5.16 접수)
 - 촛불집회 ('08.7.10, '08.7.28 접수)
 - PD수첩 ('09.3.26 접수)

- 용산 화재사건 ('09. 4. 1 접수)
-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표적 단속 및 강제퇴거 ('10. 1. 15 접수)
- 용산철거대책위 활동가의 구속 기소 ('10. 4. 6 접수)
- 천안함 관련 UN 문제제기에 대한 수사 ('10. 7. 6 접수)
-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현장 ('12. 5. 12 접수)
- 이주노조위원장 입국 거부 ('12. 6. 21 접수)

□ 검토

- 면담 여부 : 위원장 면담 적절
 -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대신하여 특정임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독립적인 인권전문가이며,
 - 우리나라는 특별보고관이 언제든지 국가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 초청장 (standing invitation) 을 부여하고 있음.
 - 국가인권기구는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특별보고관의 초청 및 방문을 독려하도록 제안할 의무가 있음.
- 참석 대상
 -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교육국장, 인권정책과장, 조사총괄과장, 침해조사과장, 홍보협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인권팀장, 통역
 - ※ 홍진표, 김영혜 위원: 개인사유 불참, 장명숙 위원: 상임위 일정으로 불참
심상돈 국장: 호주 인권위원회 출장으로 불참

□ 향후 계획

- 외교부를 통해 일정 확정 (5. 29, 14:00 ~ 15:00)
 - * 5. 30은 위원장 별도 일정이 있으며, 5. 31은 연찬회 旣계획
- 의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면담자료 작성

2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간담회 시나리오

1. 일시: 2013.5.29(수) 14:00-15:00

2. 세부진행

일 정	시 간	주 요 내 용
▪ 차량영접	13:50-13:55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보고관 일행(5명) 영접 (차량정보 확인예정) (인권정책과장, 국제팀장) • 13층 전원위원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참가자 전원회의실에서 대기 ※ 좌석 및 명패 사전배치 (홍승기)
<이동>	13:55-14:00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2호기 (오퍼레이터: 홍승기)
▪ 영접인사	14:00-14:05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로비: 정책교육국장, 에디터
▪ 위원장 예방	14:05-14:10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 특별보고관 환담 (접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석: 사무총장, 정책교육국장
▪ 간담회	14:10-14:55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정책과장 ○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인사말씀 및 참가자 소개(10분) - 업무현황 설명(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담당관 - 질의응답(20분) ※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 양측 통역사가 순차통역
▪ 기념사진	14:55-15:05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사진 촬영(홍승기) 및 기념품 전달 (김현철) ※ 장소: 13층 전원회의실
▪ 차량영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영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과장, 국제팀장, 실무자 - 엘리베이터 2호기 (오퍼레이터: 홍승기)

3. 참석자

- 외부(5): 특별보고관, 수행비서(Ms. Dolores Infante-Canibano, OHCHR) , 통역 2명, 외교부 인턴 1명
- 내부(15명): 위원장, 유남근 위원, 사무총장, 정책교육국장, 인권정책과장, 조사총괄과장, 침해조사과장, 홍보협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광주지역사무소장, 국제인권팀장, 법제개선팀장, 실무자, 통역
- ※ 홍진표, 김영혜 위원: 개인사유 불참, 장명숙 위원: 상임위 일정으로 불참
심상돈 국장: 호주 인권위원회 출장으로 불참

4. 기타 참고사항

1) 통역

- 통역사: 3 (특별보고관 수행통역사 2명, 위원회 에디터 1명)
- 위원회 업무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며, 특별보고관 수행통역사가 위스퍼링 통역 실시. 단, 특별보고관 발언은 수행통역사가, 우리측 발언은 위원회측 에디터가 통역 담당

2) 업무현황 보고

- 사회자: 이석준 인권정책과장
- 보고자: 류인덕 기획재정담당관
- ※ 보고내용: 위원회 소개, 인권옹호자관련 활동, 개인진정 조사결과

3) 자료제공

- 간담회시 위원회 발표자료
- 위원회 소개 브로셔, 영문연간보고서(2012년), 인권영화 DVD. 끝.

3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일정

Sekaggya 특별보고관 방한단 개요

- 방한자 : 마가렛 세카가(Mrs. 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 수행원 : 돌로레스 인판떼 까니바노(Ms. Dolores Infante-Caniban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국 인권담당관(Human Rights Officer, Special Procedure Branch,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통역 : 최윤희('71.12.4) 010-4258-9103, maybride7@gmail.com
한현진('79.12.3) 010-8875-8502, jinlucia@gmail.com
- 외교부 연락관 : 장종훈('89.2.9)
010-9028-1430, jhjang401@gmail.com
- 숙소 : 코리아나 호텔 ○ 차량 : 일일 대절 택시 이용

5. 26(일)

04:50

한국 도착(◀엔테베)

5. 29(수)

10:00-10:30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

12:00-13:00

외교부 김문환 국제기구국장 주최 오찬

14:00-15:00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면담

15:30-16:00

서울특별시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 면담

16:30-17:30

경찰청 안재경 차장 면담

5. 30(목)

09:30-10:10	법무부 국민수 차관 예방 및 인권국장 면담
10:20-11:00	고용노동부 최기동 국제협력관 면담
11:10-11:40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관 면담
14:00-15:00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 면담
16:00-17:00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홍보협력담당관 및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최옥술 방송심의국장 합동면담
17:30-18:30	한국전력공사 김태영 송변전개발처장 면담

5. 31(금)

09:30-10:20	대검찰청 박은재 국제협력단장 면담
10:30-11:20	대법원 전지원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면담
13:00-13: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면담
14:00-15: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면담

6. 2(일)

20:20-22:26	서울 → 울산 이동(기차편)
-------------	-----------------

6. 3(월)

15:00-16:00	울산광역시 및 밀양시 방문 밀양시 엄용수 시장 면담
-------------	--

6. 4(화)

07:45-08:35	부산 → 제주 이동(OZ 8107)
17:55-18:40	제주 → 광주 이동(KE 1908)

6. 5(수)

10:00-10:30

11:00-11:50

12:00-13:00

18:05-21:26

광주광역시 방문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황정모 소장 면담

광주광역시 이형석 경제부시장 주최 오찬

광주 → 서울 이동(기차편)

6. 7(금)

09:00-09:15

09:20-09:40

11:00-12:00

21:20

외교부 조태열 2차관 예방

외교부 김문환 국제기구국장 면담(de-briefing)

방한결과 기자회견

한국 출발(▶엔테베) /끝/

4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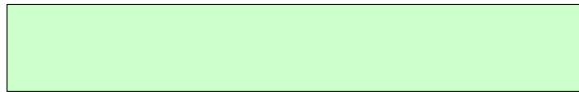
성 명	마가렛 세카가 (Margaret <u>Sekaggya</u>)	
국 적	우간다	
생년월일	1949년 10월 23일 (64세)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 우간다 Makerere 대학 법학 학사 ○ 1990 잠비아 대학 법학 석사(LL.M.)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 우간다 Mengo 치안판사 법원 판사 ○ 1976~1978 Law Development Center 교수 ○ 1978~1982 잠비아 사법부 치안판사 ○ 1982~1990 유엔 나미비아독립지원기구 교수 ○ 1990~1995 Law Development Center 교수 ○ 1995 헌법 제정단 연구·자문관 ○ 1995~1996 우간다 임시선거위원회 위원 ○ 1995 우간다 고등법원 판사 ○ 1996~2008 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 2008.3월 유엔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회장 ○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T/F 위원 (2006~2008) ○ 우간다 인권센터 이사장(Executive Director) 	

5

인권옹호자 좌석배치(전원회의실)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김현철 (국제인권팀장)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김대철 (침해조사과장) 이석준 (인권정책과장) 서수정 (홍보협력과장)



한병일 (조사총괄과장)

최윤희 (통역)

마가렛 세카가 (유엔 특별보고관)

Ms. Dolores Infante-Canibano (OHCHR)

한현진 (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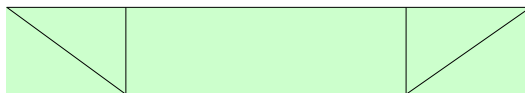
안석모 (정책교육국장)

손심길 (사무총장)

현병철 (위원장)

여혜정 (통역, 에디터)

류인덕 (기획재정담당관)



출
인
마

□ 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경험과 노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한국 방문은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우리 위원회가 개최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참가하셔서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해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 그 당시 인권보호를 위해 분쟁지역에서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진정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 우리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참석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나서, 류인덕 기획재정담당관이 업무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국장 소개)

(기획재정담당관이 업무브리핑)

□ 마무리 말씀

-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인권옹호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는 기구로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보고관님의 이번 한국방문이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간담회 브리핑 자료

- 특별보고관님의 한국의 인권상황 이해를 돕고, 또 199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권리책임 선언문 이행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브리핑을 준비하였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요 및 기능,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옹호자(특히 인권단체)관련한 활동 그리고 인권옹호자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연간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여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및 기능

- 설립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었습니다.
- 기본성격
 - 인권전담 국가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전담 국제기구입니다.

- 독립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구로 업무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조직과 예산이 관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준사법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및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제도·관행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준국제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상 국내법에 따르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해서 활동합니다.

○ 기능

저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4대 주요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정책

- ▶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 국제 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 조사구제

- ▶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구급·보호 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 성희롱 조사·구제 등

○ 교육홍보

- ▶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 국내·외 협력

- ▶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한계

- 조사범위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만 조사 가능(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재산권(제23조), 재판받을 권리(제27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제33조), 사회보장(제34조)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함(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현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중앙에 3국(관) 12과(담당관), 지방에 부산, 광주, 대구지역 3개 인권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사 집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013.5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186명입니다.

2.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다음으로 진정사건 및 인권교육 등 활동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진정사건 접수 현황

-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6만8,254건인데, 이 중 76.3%인 5만2,106건이 인권침해, 20.7%인 1만4,098건이 차별, 3%에 해당하는 2,050건이 기타 사건입니다.

2) 인권침해 사건

- 인권침해 접수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구급시설 ⇨ 경찰 ⇨ 다수인보호시설 ⇨ 기타 국가기관의 順입니다.
- 최근 3년간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6264건(2010년) ⇨ 5158건(2011년) ⇨ 6936건(2012년) 입니다.

3) 차별사건

-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4,098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4,677건(33.2%)를 차지했고,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5,384건(38.2%), 교육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890건(6.3%)이었습니다.
- 사유별로 분류하면 장애(41.7%) ⇨ 사회적 신분(9.9%) ⇨ 성희롱(9.3%)의 順이었습니다.

3. 인권교육과정 운영

- 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약 6,230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 553천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 2012년 한 해에만 1만456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분야별로는 학교영역의 아동·청소년, 공공영역의 행정공무원·보호시설 관련 공무원(정신보건, 장애, 다문화, 노숙인 분야의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포함)·군부대 종사자(장교, 부사관, 병사), 시민영역의 전문집단(언론인)·기업인·사회적 약자 집단(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현황 (2002~2012년)

구분	계		연수과정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8년	827	63,258	45	2,643	66	1,972	31	12,394	685	46,249
2009년	732	54,716	131	7,056	109	3,043	60	13,573	432	31,044
2010년	1,069	90,079	287	22,451	88	1,726	65	10,538	629	55,364
2011년	1,167	114,097	166	7,064	153	3,019	71	14,681	777	89,333
2012년	1,300	124,937	214	10,456	119	2,204	109	21,550	858	90,727
총 계	6,230	553,502	919	53,898	672	17,809	386	83,286	4,253	398,509

4. 인권옹호자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다음으로 인권옹호자들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권옹호자들과 협력은 저희 위원회의 주요 임무중 하나로 이는 저희 위원회법 19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 먼저 우리위원회는 시민사회영역에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집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및 인권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 참고 : 보조금 지원현황 (2009~2013)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 사업수	33개	15개	16개	15개	14개
금액	269백만원	123백만원	130백만원	115백만원	115백만원

□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 위원장님을 포함한 인권위원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이해하고자, 매월 인권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무의탁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 취약분야 시설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인권

활동가들의 제언을 해당 부서와 공유해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위원장 인권현장 방문현황 (2009.7~2013.4)

년도	2009.7 이후	2010	2011	2012	2013. 4.현재
방문단체	5곳	8곳	22곳	17곳	6곳

□ 인권단체와의 일상적 협력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간부와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와 현장을 찾아다니며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인권시민단체의 행사 참석, 후원 등 한 해 7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또 위원회는 인권단체에 배움터를 개방(연 100여회)하여 인권을 과제로 한 세미나, 토론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인권옹호자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다음으로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우리 정부의 답변서를 통해 특별보고관님도 잘 알고 계시므로, 주로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촛불집회 관련

□ 사건 개요

- 2008. 5.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많은 시위자가 체포·연행된 사건관련 입니다.

□ 우리 위원회의 활동

- 촛불집회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입장 표명: 2008. 5.. 청소년단체 등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학생·청소년들에게도 평화적 집회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위 조사관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예방 또는 증거채취 활동을 하였습니다.
- 촛불집회 주요 피해사례 직권조사와 권고:
 - 2008. 7.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 직권조사 결과, 경찰의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인해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경고, 진압책임자 경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당시 경찰 부상자는 464명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노력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기초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인권옹호자의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 용산화재사건 관련

□ 사건 개요

- 2009. 1. 용산에서 50명 가량의 용산 주민이 모여 빌딩 옥상에서 재개발사업관련 농성을 경찰이 진압 도중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시위자와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활동

- 사건 당일 조사관 파견: 용산사건 당일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진정사건은 검찰청에 이송: 우리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 등이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였습니다.
- 경찰의 과잉진압 재정신청 사건 관련 서울지방고등법원에 의견제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관련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정비 및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관련

□ 사건 개요

- 제주 강정마을의 환경운동가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활동

○ 인권지킴이 활동 통해 인권침해 모니터링과 예방

- 2011. 9월중 4차례에 걸쳐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긴급구제 요청 현장 해결

- 2012. 2월 시위현장 식수반입을 불허하는 경찰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조사관을 현장파견하여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 수녀 등 강제연행 사건 현장해결

- 2012. 1월 강정마을 관련 수녀들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즉시 조사관을 파견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불입건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천안암 사건관련

□ 사건 개요

- 2010. 6. 참여연대는 46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합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자료 모두 공개 및 사건 재조사를 요청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를 조사한 사건임.

□ 우리 위원회의 활동

- 기초조사 이후 본격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감안: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는 형사조사와 구분되는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정부 고위관계자의 관련 발언도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념적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 논란 유감: 천안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념갈등이 있는 사안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는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원회는 향후 유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5) 네팔 인권운동가 미노드 옥탄씨 송환사건 관련

□ 사건 개요

- 네팔 인권운동가 미노드 목탄(Minod Moktan)은 2009년 10월, 집 앞에서 체포 후 강제송환된 사건임.
- 한국 법무부는 목탄이 1992년 단기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약 17년간 불법체류하고, 2000년 단속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강제퇴거전 도주하였고, 2009년 다시 체포되어 10월 네팔 본국으로 송환되었다고 답변함.

□ 우리위원회의 활동

- 우리 위원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비록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등 단속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사건 진정인(Minod Moktan)의 체포과정 및 강제송환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과 보호조치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및 강제송환 관련

(Kajima Khapung, Raju Kumar Gurung, Abu Basher)

□ 사건 개요

- 3명의 이주노동자(남성)은 이주노동자로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2007년 11월말 체포당해 본국(네팔과 방글라데시)으로 송환되었음.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와 송환이 그들의 노동운동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우리위원회의 활동

- 우리 위원회는 2007. 11. 27. 동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 조사 기간에 동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여 2007. 12. 13. 본국으로 강제송환하였습니다.
- 동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퇴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여 2008년 4월 법무부 등 관기관계에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 법무부에 대해서 외국인을 체포, 보호조치(구금)하거나 강제퇴거 집

행절차를 진행할 때 영장주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출입국 관리법령 개정)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 우리 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 최소한 위원회 조사가 종료 될까지는 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7)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관련

(Torna Limbu, Abus Sabur씨에 대한 긴급요청건)

□ 사건 개요

- 네팔과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인 2명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08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본국 송환되었습니다.
- 2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이 평화적 인권옹호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와 노조결성 및 집회 등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우리위원회의 활동

- 피해자들은 우리 위원회에도 2008. 5. 8. 관련 사항을 대한 진정을 접수하면서, 강제퇴거 중지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08. 5.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날(5.15.), 동 피해자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 조치하였습니다.

- 강제퇴거 적법성 등은 피해자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2008. 6.)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법(재판사항)에 따라 각하(2008. 8.)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2. 8. 피해자측에서 제기한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법무부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하였음.

- 한편, 우리 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내용에 대한 대법원 계류 중 사건에 대해, 2008년 5월, 국제인권규범에 비취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결성권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 밀양송전탑 건설관련

□ 사건 개요

-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반대 시위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여 주민과 공권력의 심각한 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회는 긴급하게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활동하였음.

□ 우리위원회의 활동

- 경찰력 투입되어 주민과 한전(경찰)간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 총 10명, 5개조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보내어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과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쳤음.

- 향후 인권지킴이단 추가 파견과 함께 진정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등 추진 예정.

브리핑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관련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조사구제 및 인권교육 이외의 인권옹호자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소개

위원회법 제19조 8호

-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수행한다.

□ 인권단체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2003년 이후 시행
 - * 인권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이해하면서 인권상황 파악,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과제 발굴을 위해 실시 중
-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취약분야 시설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제언을 해당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

□ 인권단체와의 일상적 협력

- 위원회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와 현장을 다니며 파악한 현장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 인권단체 후원 및 위원회 배움터 개방(연 100여회)으로 인권단체 활동 지원

2. 사설경비업체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방조 관련

위원회의 활동

- 노사관계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는 사설경비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개선 권고 및 국회에 의견 표명함('12. 11. 22).
 -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수행업무는 「경비업법」 규정과 그 해석상 물적 시설 보호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로 국한되어야 함.
 -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찰청은 2013. 1월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경비업체의 노조에 대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 추진
- 또한 경찰청 개선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 ('13. 2. 27)
 - 경비업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중지명령 신설, 노사분규 등 집단민원현장 48시간 전 경비원 배치허가제 도입 등
- 앞으로도 위원회는 인권보호기구로서 시의성 있는 노동인권 현안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폭력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3. 촛불집회와 시민단체 탄압 관련

위원회의 활동

- 촛불집회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입장 표명('08. 5. 23)
 -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도 평화적 집회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인권지킴이단 운영
 - '08. 5. 24부터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고, 동년 6. 3~11 대규모 집회 기간 인권지킴이단 운영(8~22명)
- 촛불집회 주요 피해사례 직권조사 및 권고
 - 경찰의 일부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인해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경고, 진압책임자 경고,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으로서 위원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음.
- 촛불집회 이후에도 인권옹호자의 활동 보장을 위한 업무를 지속해 왔으며,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비례의 원칙 및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한 조사와 권고도 지속함.
 - 촛불집회 시위 시 경찰의 색소물포 사용 시정 권고(2009), 한미 FTA 관련 시위 시 물대포 사용 시정권고(2012) 등
- 향후 위원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

4. 인권옹호자 탄압 - PD수첩 관련

사건 개요 및 위원회의 활동

- 2009. 3. 25.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아내와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 됨.
 - 이는 2008. 5월 이PD가 만든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PD수첩 관련 진정(08-진정-0003291) 각하 : 2009. 7. 6.
 - 진정요지 : PD수첩 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중간수사 발표에서 “오역, 왜곡보도”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으로서 부당함.
 - 본 진정은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제7호(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각하 종결하였음.

□ 진정서는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자체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의 개시 자체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범죄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특히, 당시 검찰이 1) 이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2) 위원회법 제3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법원의 판결 내용(2010노380판결)

- 피고인들이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 선고

- 피고인들이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 선고

5. 인권옹호자 탄압 - 한진중공업관련 김진숙씨 긴급구제

사건 개요 및 위원회의 활동

-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 2011. 1. 6. ~ 2011. 11. 10.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85호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 2011. 6.28. 위원회에 음식물, 식수, 속옷 등 생활필수품 반입 등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한 사건임
- 위원회 활동: 민주노총 김진숙씨 긴급구제는 현장 해결되어 기각

- 우리위원회는 긴급구제를 접수받고, 신청 당일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회사측은 식사, 음료, 약품 등을 공급하기로, 또한 경찰은 법집행시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확인하였기에, 이는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1. 10월. 소위원회에서 기각됨.
- 위원회는 설립이후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노동자 감시,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사구제와 정책권고를 해왔음.
- 위원회의 긴급구제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김진숙씨 사건 접수즉시 즉시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초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관계자들간의 중재를 통해 현장 해결된 사안이었음.
-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임.

6. 인권옹호자 탄압 - 기무사 사찰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개요 및 위원회의 활동

- 2009. 8. 5. 쌍용자동차 농성현장에서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의 수첩과 채증 자료에 의하면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라는 취지로 2009. 9. 2. 위원회에 진정 접수
- 위원회 활동: 진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각하됨

-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기무사령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태만히 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진정인은 2010. 4. 22.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와 제3항(조사중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진정사건이 각하 종결됨. 이 모두는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었음.
-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 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음

7. 용산 화재사건 관련

위원회의 활동

- 사건 당일 조사관 파견 : 검찰의 협조거부로 현장 조사 한계
- 검찰의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2010. 1. 11.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진정 사건은 검찰청에 이송
 - 동일내용으로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 등이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송
- 경찰의 과잉진압 재정신청 사건 관련하여 서울고법에 의견 제출
 -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음(2010. 1. 11. 전원위).
-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2009. 2. 12. 상임위)

- 사건 당일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검찰의 협조거부와 더불어 위원회 조사 기능의 한계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위원회는 경찰에 연행된 철거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시정권고 하였음.
- 용산사건 이후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함.

8. 용산 철거대책위 활동가의 구속 기소 관련

사건 개요

- 2009. 3월 서울중앙법원은 인권활동가 박래군씨와 이종희씨에 대해 용산 화재사건 관계자로 영장 발부
 - 두 인권옹호자는 거주지가 있는데다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이들의 구금은 인권옹호 활동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우려가 있었음.
- ※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없음.

- 동 사건은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건으로 인권위법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음.
- 다만, 두 인권활동가에 대한 재판과 관련, 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9.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현장 관련

위원회의 활동

-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인권침해 모니터링과 예방(2011. 9. 1~3)
 -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담당과장 등 6명)
- 긴급구제 요청 현장 해결(2012. 2. 27, 3. 7)
 - 시위현장 식수반입을 불허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해결
- 수녀 등 강제연행 사건 현장 해결(2012. 1. 10)
 - 조사관을 파견하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불입건하도록 조치
- 시위대 강제연행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 권고

□ 해군기지 건설과 평화권·환경권의 문제 등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의 접근은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

- 다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음.

□ 2011년 총 4회에 걸쳐 인권지킴이를 현장에 파견하여 활동하였고, 긴급구제 요청도 현장에서 중재·해결하였음.

□ 총 35건의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8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였고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있음.

* 주요 권고 사례

- 시위 해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찰서장 주의조치

10. 천안함 관련 UN 문제제기에 대한 수사 관련

사건 개요

- 2010. 6월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에 조사자료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에 전달
 -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민군합동조사단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없음.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안타까움.
 - 검찰의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는 형사조사와 구분되는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임.
- ※ 2004년 우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11.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강제송환 관련

사건 개요

- 네팔 인권운동가 미노드 목탄(Minod Moktan)씨가 2009. 10월 집 앞에서 체포 후 강제송환됨.
 - 강제송환 이유는 한국에서 이주노동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와 체포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과잉진압과 자의적 구금이 있었다는 정보도 있음.
 - 법무부는 목탄씨가 1992년 입국 후 약 17년간 불법체류, 강제퇴거 전 도주 등의 혐의로 2009년 강제송환되었다고 답변함.
 - 또한 목탄씨의 강제송환이 이주노동 운동과는 무관하며,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및 자의적 구금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
- ※ 이 사건 관련한 진정접수는 없었음.

- 동 사건은 국내에서 18년째 머물며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다 법무부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힌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한국명)씨의 본국 강제추방 사건으로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크게 이슈화 시킴.
 - 우리 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회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 장기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담당조사관이 인권위원장 의견표명 등 검토 필요성을 작성, 메모보고 하였음.(2009. 10. 27.)
- 현재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으며,
 - 2012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4차례 권고한 바도 있음.

12.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및 강제송환 관련

사건 개요

- 2007.11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는 3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Kajima Khapung, Raju Kumar Gurung, Abu Basher Moniruzzaman)를 체포, 본국(네팔과 방글라데시)으로 송환조치하였음. 노동운동관련 체포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위원회는 2007. 11. 27. 동 진정사건을 접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 조사기간중에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여 2007. 12. 13. 진정인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였음.
- 위원회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2008. 4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음.
 - 법무부에 대해서 외국인을 체포, 보호조치(구금)하거나 강제퇴거 집행절차를 진행할 때 영장주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출입국관리법령 개정)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 위원회 조사중인 진정사건에 대해 최소한 위원회 조사가 종료될까지는 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단속과정상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1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관련

사건 개요

- 2008.5.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대표와 부대표(Torna Limbu, Abus Sabur)를 체포하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였는데, 체포이유는 노조결성 및 집회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무부는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 및 강제퇴거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한편,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측에서 제기한 위헌소송을 법무부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사건과 관련, 2008. 5월, 국제인권규범에 비취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결성권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 따라서 향후 우리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를 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14. 인권옹호자 탄압관련 조사와 결정 지연, 외면

사건 개요

- 정부에 민감한 사안인 경우 시간을 끌다가 각하나 기각함.
- 마포구청 성소수자들의 현수막 게시 거부 사건 5개월 넘게 결정미루고 강정마을 사건도 매우 더디게 진행,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건도 후속조치나 조사 이뤄지지 않음,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도 1년 반 넘게 조사나 결정 미뤄더니 대부분 기각, 각하하였음.

- 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진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3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조사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다만, 마포구청 건은 2012. 12. 10. 진정접수됐고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어 다음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 강정마을 관련 진정은 총 35건 중 8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비롯 28건을 결정했고, 7건은 현재 조사중임.
- 또한 일제고사 건은 전문가 토론회 등 거쳤으나 일제고사가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 블랙리스트 건은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들었던 것 외에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 활용된 바 없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15. 밀양 송전탑 관련 인권위의 대응

사건 개요

-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반대 시위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지만 인권사안 발생여부와 위원회가 개입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전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자 주민들이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이 양측의 충돌사태에 대비하여 7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병력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주민과 공권력의 심각한 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회는 긴급하게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활동하였음.

□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

- 경찰력 투입이 개시된 5.20.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선발대를 파견하였고, 5.21.~22. 까지 이틀동안 총 10명의 조사관을 5개조로 나눠 주민과 한전(경찰)간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과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쳤음.

□ 인권지킴이단 활동 평가와 향후 조치 계획

- 인권지킴이단이 초기에 투입되어 주민, 한전, 경찰측을 접촉하여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과 정치권 등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음
- 향후 인권지킴이단 추가 파견과 함께 진정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등 추진 예정.

16. 2010년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위 농성시 단전, 난방중단

사건 개요

- 2010. 11. 22. ~ 12. 10.(19일간)까지 장애인인권단체 35명이 “장애인활동지원 개정반대” 등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하였음.
- 특히, 2010. 12. 2. 21:30 부터 익일까지 장애인단체 회원 100여명이 위원회 청사 전체를 점거하고 인권위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위원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 위원회 출범 이후, 2013년 현재까지 38회의 점거농성이 발생했고, 장애인단체에 의한 점거농성은 15(420일)회 있었음.
- 위원회는 장애인 단체 회원·활동가들에게 대화를 통해 퇴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점거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고의로 단전 조치를 하거나 난방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없음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해왔음. 다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의사표현의 절차 방법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설명자료

2013. 5.



국가인권위원회

1

유엔 인권이사회 설명자료

1. 설립 배경

-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 3. 15 유엔총회 결의(RES. 60/251)로 설립
- ※ 구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반면,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검토 및 이에 대한 권고/유엔 체계 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 담당
- 이를 위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국별·주제별 특별보고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인 진정절차 제도(Complaint Procedure) 등 운영

3. 주요제도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 매 회당 2주간 14개국씩, 매년 3회(2, 5, 10월)에 걸쳐 총 42개국 검토

-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
 - 현재 국가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은 10명(북한,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이란, 미얀마,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 포함)은 여성폭력, 표현의 자유,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48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
 -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2

특별절차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설명자료

1. 유엔 특별절차의 태동

- 1967년 채택된 ECOSOC 1235 결의는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으로, 이를 통해 인권위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공개토의를 갖기로 한바, 추후 국별(country-specific) 및 주제별(thematic) 특별보고관 제도의 창설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 모인 특별보고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보고관 제도가 느슨한 임시(ad hoc) 절차들의 집합을 넘어선, 하나의 ‘인권보호 시스템(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임을 천명
- 1993년 공동성명 이후, △특별절차의 제도적 성과, 특히 80년대이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특별절차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개별 mandate가 UN의 전체 인권보호체제의 하나로 격상

2. 인권이사회와 특별절차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제도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2013.4월 현재, 36개의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13개의 국별 특별보고관이 활동중

- 특별보고관의 주요 임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 감시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
 -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진정 접수, 국가 방문, 관련 연구 시행
 - ※ 공식 방문은 해당 정부와의 공식적인 방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각 특별보고관은 1년에 두 차례 공식 방문 시행

3.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2000.4월 채택된 舊 인권위원회 결의 2000/61을 통해 창설
 - 인권이사회는 2008.3월 결의 7/8과 2011.3월 결의 16/5를 통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3년씩 재연장
 - Margaret Sekaggya 특별보고관(우간다)은 Hina Jilani (파키스탄 2000-08)에 이은 2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 2008.3월부터 활동중
- 주요 임무
 -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접수, 조사 및 대응
 - 인권옹호자 권리·의무 선언의 증진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정부 및 관련 행위자들과 협력 및 대화
 -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권고 및 동 권고 이행 여부 확인

보편적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유엔총회 결의 53/144 (1998년 12월 9일)

【1998년 인권옹호자 권리책임 선언문】

- 1998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선언문으로, 공식 명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 전문과 총 20개 조항이 있으며, 크게 보면 인권옹호자의 권리(1조-13조)와 국가의 의무(14조-15조)로 구분
- 선언문에 규정된 인권옹호자의 권리로 대표적인 것들은 1) 결사와 집회의 권리, 2) 정보의 추구하고 획득의 권리, 3) 인권침해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국가의 의무로 대표적인 것은 1) 관할권내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제공, 3) 국제인권조약의 배포, 4) 독립적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지원, 5)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음.
- 선언문 17조는 이 선언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유엔총회 결의 53/144 (1998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데 있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보편적으로 존중되고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유엔이 채택한 여타의 인권조약들과 지역차원의 조약들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신념, 국적 또는 출신, 재산, 출생 및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구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숭고한 의무를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종분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세의 점령 또는 정복, 침략, 주권, 민족, 영토에 대한 위협이나, 민족의 자결권,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행사의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광범위하거나 노골적인 또는 체계적인 침해와 관련하여 민족 집단과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이 중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부재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며,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각각의 권리나 자유의 행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증진,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 주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 단체, 협회도 국내외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관련지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각 국은, 특히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축하고 관할지역 내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 이행할 주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각 국은 이 선언문에서 언급하는 권리 및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이에 필요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헌장 및 각국이 준수해야 하는 기타 국제적 의무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국내법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시행, 향유하며, 이 선언문에 언급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법적 기본 틀이 된다.

제4조

이 선언문의 어떤 내용도 유엔헌장의 취지나 원칙을 훼손한다거나 이와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기타 관련 국제협약 및 규정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

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권리를 가진다.

- (a)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 (b) 비정부기구, 협회, 또는 단체의 결성, 가입 및 참여
- (c) 비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와의 의견 교환

제6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입법, 사법 또는 행정 시스템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어떻게 시행 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국정부의 운영 및 공공 업무 수행에 아무런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접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업무향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제9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고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자는 직접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대리인을 통해 독립적이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관할 사법당국이나 법으로 설립된 기타 관계 당국에 제소하여 공청회를 통해 즉시 사건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당사자의 인권이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판결을 통해 법에 의거한 배상 등 구제방안을 제시 받고, 최종 결정사항 및 배상이 지체 없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정부 기구가 시행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청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부, 혹은 해당국 법률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판결하여야 한다.
 - (b)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법 및 관련 국제의무 규정과 조약을 준수하였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 (c)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데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기타 관련 자문서비스 및 지원을 제안 및 제공한다.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관련 국제협약 및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심사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전문 국제기구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관할 영토 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심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제10조

어떤 사람도 작위 또는 무작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가담할 수 없으며, 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직무나 직업을 합법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직업윤리 및 강령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제12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단체나 개인이 자행한 폭력 행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반대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선언문 제3조에 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한다는 명백한 목적에 자원을 요청, 수령,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2.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a) 국내법령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한다.
 - (b) 국제인권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에 조약가입국으로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조약감시기구의 심의내용에 대한 요약서 및 공식 보고서 등,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 역시 국내문서와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모두 공개한다.
3. 국가는 관할 영토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형태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설립, 발전되도록**

록 하며, 이를 지원한다.

제15조

국가는 각 학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고, 변호사, 경찰,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개인, 비정부기구 및 기타 관련기관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해당 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인종과 종교단체 간의 상호이해, 관용, 평화, 친선을 강화하는 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7조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인식, 존중하고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성, 공공질서, 일반복지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의무 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완전하게 인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며, 민주사회, 체제, 과정을 증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3. 또한,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제19조

이 선언문의 어떤 규정도 개인, 단체, 사회기관, 또는 국가가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하거나 어떤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제20조

이 선언문의 어떤 규정도 국가가 유엔헌장 규정에 반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 조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개인진정 사례

2012년 서한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강정마을의 환경운동가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 사례 관련 요청 서한 관련해 정부는 2013년 1월 2일 답변함. - 필리핀 인권운동가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답변 없음. - 특별보고관은 2013년 대한민국 방문 요청에 대한 정부의 승낙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방문을 고대함.
2011년 서한: 한국 내용 없음 ²⁾
2010년 서한 ³⁾
<p>1.1 요청서한* (2010/1/15): <u>네팔 인권운동가 미노드 목탄(Minod Moktan)씨의 강제송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탄씨는 2009년 10월, 집 앞에서 체포 후 강제송환됨. 체포 및 강제송환이 그의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권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불법 이주노동자 수색 당시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과잉진압과 자의적 구금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으며, 직원이 당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체포 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짐.
1.2 정부의답변 (201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출신의 목탄씨는 1992년 단기여행비자(B-2)로 입국한 후, 17년 8개월간 불법 체류. 이에 2000

<p>감재로 언행할 현재 그는 서울 검찰청에 구금되어 있으며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음.</p> <p>- 이PD의 구금 및 조사는 2008년 5월, 그가 프로듀싱한 PD수첩이 광우병에 대해 보도했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프로그램은 '사소한 반역 오류'로 농림수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있음.</p>
<p>1.2 정부의 답변 (2009/6/2)</p> <p>- 이훈근PD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신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가 프로듀싱한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으로 오역된 지막의 사용과 외곡된 정보 전달을 통해 전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임.</p> <p>- 이에 대해 이PD가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p> <p>- 이PD는 소환을 거부하자 바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은 조사를 위해 이PD에게 4장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그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소환에 응하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음. 이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한 것임.</p> <p>- MBC의 프로듀서인 이PD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소가 형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데에서 조사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리고는 할 수 없음. 이는 농림수신부의 전 장관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이PD가 사실을 외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공정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인의 윤리를 어긴 데 대한 것임.</p>
<p>2.1 요청서한 (2009/4/1): 용산의 시위지에 대한 과잉대응, 강제퇴거, 서방사건 등</p> <p>- 2009년 1월 20일 용산 제4구역에서 5명의 시위자가 재개발과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고 경찰에 대응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은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충분한 재정적지원을 하지 않고 그들을 퇴거시키려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임.</p> <p>- 2008년 3월, 법대위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국 철거민 연합과 함께 재정착 계획을 제공하라는 시위를 기획함. 2009년 1월 9일, 50명가량의 용산 주민이 모여 5층 빌딩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감.</p> <p>- 농성 시작 3시간 반 후, 용산 경찰서장의 요청과 서울경찰청장의 허가로 진압이 시작됨. 1600명의 경찰과 49명의 특별 기동대가 투입된 이 진압 도중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시위자와 경찰 1명이 사망.</p> <p>- 이 사건은 무연한 사고가 아닌 재개발 지역 내에서 계속되던 주민들에 대한 경찰과 용역의 횡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이후 결성된 조사단은 모든 책임은 시위자에 부과하고 경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p>
<p>3. Observation</p> <p>- 정부는 3월 26일 서한(PD수첩 이훈근PD관련)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보내 왔으나 보고서 작성 일정 관계상 충분히 심지 못함. 4월 1일의 요청(용산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함.</p>
<p>2008년 서한</p>
<p>1.1 요청서한 (2008/1/18)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p> <p>- Kajiman Khapung, Raju Kumar Gurung, Abu Basher M. Moniruzzaman(Mosum)에 대한 요청 서한. 세 남성은 민주노총의 이주노조 위원장 등으로 서울 출입국사무소로 항의하러 가던 중 체포당했으며, Raju씨는 알하던 공장 앞에서 4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됨.</p> <p>- 불법체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당했다고 알려진 이들은 바로 외국인보호소에 보내졌으며, 이후 즉시 본국(네팔과 방글라데시)로 송환됨. 이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이주노동권에 대한 체포와 송환 중 가장 최근 사건임. 노조원들의 체포와 송환이 그들의 노동권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우려가 계속됨.</p>
<p>1.2 긴급요청(2008/5/16):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p> <p>-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인권운동가인 Torna Limbu와 Abus Sabur씨에 대한 긴급 요청으로, 두 사람은 서울경기인민노동자 상담원이며 현재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음.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내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음.</p> <p>- 2008년 5월, 두 사람은 10-15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정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고, 두 사람 모두 즉각 송환됨. 체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은 팔을 비틀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짐.</p> <p>- 두 사람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그들의 발화적 인권옹호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집회를 하는 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깨닫히려는 추세가 보여 우려됨.</p>
<p>2.1 긴급요청 (2008/7/10) 촛불집회와 시민단체 탄압</p> <p>- 정부의 촛불집회와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에 대한 탄압 관련 긴급 요청.</p> <p>- 2008년 5월 24일,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림. 이 날 933명의 시위자가 체포,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경찰 공무원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됨.</p> <p>- 시위 중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진압하여 폭력을 썼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옴. 이 과정에서 약 400명</p>

<p>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임금 체불건만 해결한 후 바로 자진 출국하겠다고 출국유예를 신청. 하지만 출국유예기간 중 도주, 2009년 10월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와 강제송환은 모두 그의 장기간의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한 것으로, 그의 이주 노동권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과 자의적 구금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p>2.1 긴급요청** (2010/4/6): 용산 철거민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이종희 위원장에 대한 체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와 진보네트워킹의 이종희씨는 재개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용산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과정에서 2009년 1월에 발생한 화재 사건의 관계자로 수감됨. 이 화재로 인해 경찰 1명과 주민 5명이 사망. - 박래군씨와 이종희씨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기 위해 시위 허가를 요청했으나 무시됨. 이에 두 인권운동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몰 후에 사망자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경찰은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 강제로 해산, 관련자를 체포함. - 2009년 3월, 서울중앙법원은 두 인권운동가에 영장을 발부함. 1월 초 징례식 이후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출두, 추가조사를 받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됨.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림. - 두 인권옹호자는 영주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미 영장발부를 위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위험은 없음. 따라서 박래군씨와 이종희씨의 구금은 그들의 인권옹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p>2.2 정부의답변 (2010/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대위의 집회는 단순한 유족 기념 행사가 아님.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동안 범대위는 시위를 5번 했는데, 이 시위 모두에 심각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었으며, 경찰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집회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 시위자들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찰을 공격함. 이에 관계자들은 폭력 혐의와 교통 방해 혐의로 체포됨. - 박래군씨와 이종희씨 두 사람은 경찰의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10년 1월 체포되어 구금될 때까지 10개월간 도주. 체포와 구금은 독립적인 사법 심사 끝에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법원은 관련 사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영장을 발부함.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임. 이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 어떠한 청원도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음.
<p>3.1 요청서한 (2010/7/1):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천안함 관련 보고서를 보낸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6월, 참여연대는 2010년 3월 26일 46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합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전달.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행위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함.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중이 참여연대를 공격하고, 전화로 협박하고, 건물 밖에서 가스통과 계란 등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함. - 2010년 6월 15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에 의한 민군합동조사관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또한 UN에 서한을 보낸 직원인 이태호씨와 고갑우씨가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됨. - 참여연대 직원에 대한 조사와 위협은 국경을 막론하고 정보를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임.
<p>3.2 정부의답변 (2010년 9월 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검찰은 참여연대를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청원을 받고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형사 조사와는 관계가 없음. 또한 참여연대가 UN에 진정한 사건에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발언한 것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추측에 불과함. - 참여연대의 요청에 의해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3주동안 5명의 경찰이 상주해 그들을 보호함. 덧붙여 경찰은 6월, 5개의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무허가 시위를 한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인지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가 있음. 또한 경찰은 현재 참여연대 직원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 폭행한 사람이 검거되는 대로 그를 사법 처리할 예정임.
<p>2009년 서한4)</p>
<p>1.1 긴급요청 (2009/3/26): MBC PD수첩의 이춘근PD 구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3월 25일 밤, MBC PD수첩의 이춘근PD는 아내와 차를 타고 MBC본부 근처를 지나가던 중, 정체불명의 차 3대로 따라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됨. 경찰은 영장을 제시했고, 이PD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의 시위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시위를 금지하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함.
 - 2008년 6월, 서울경찰청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수색하는 사건이 있었음. 50명의 조사관은 한국진보연대의 컴퓨터 세대를 압수, 수색했고 사회진보연대의 컴퓨터 23대를 압수당함. 해당 단체의 시위 관련자는 체포되었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금됨.

2.2 정부의답변 (2008/10/15)

- 정부가 서헌에 언급된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막는다는 주장은 거짓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임.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적법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공공질서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인의 명예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표현의 자유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제시된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님.

3.1 요청서한 (2008/7/28): 촛불집회

- 2008년 6월,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의 이준형 변호사는 감시단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옷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작위로 시민을 공격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던 중 이준형 변호사는 방패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음. 그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골절과 내출혈 치료를 받음.
 - 6월 25일, 이재정 변호사와 강영구 변호사는 해체 명령을 듣지 않은 시민을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던 중 체포되어 24시간간기량 구금됨. 안진걸씨가 청소년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자 경찰관 몇 명이 그를 잡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타박상을 입고 다른 30명과 함께 경찰서에 끌려감.
 - 다른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에 구금되어 6시간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방패로 가슴을 맞는 등 구타를 당했으며, 경찰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던 대학생 이나래씨의 머리를 군화발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 이나래씨는 차 밑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경찰은 폭행을 계속했으며, 뇌진탕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이씨에 대한 폭행이 비디오에 찍혀 MBC에 방송됨.

3.2 정부의답변 (2008/10/15)

- 위 2.2 답변과 같음.

2007년 서한: 한국내용 없음⁶⁾

□ 회의개요

- 일시: 2013.5.6(월) 10:00-14:00
- 주최: 참여연대 외 20여개 단체 (대회참가자 약40명)

□ 주요 회의내용

-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겪는 활동침해사례 7가지 제시
 - ①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 과도한 벌금부과 등 인권옹호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 ② 인권옹호자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
 - ③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및 사설경비업체의 폭력의 방조
 - ④ 인권옹호 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북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어 정당한 활동을 왜곡하고 백색테러 조장
 - ⑤ 실정법의 과도한 집행을 통한 인권활동 탄압
 - ⑥ 해외 활동가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
 - ⑦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보호역할 방기

□ 인권위원회 관련 이슈

- ①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면죄부 발급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관련 김진숙씨 긴급구제 기각
 - MBC PD 수첩 제작진 인권침해 진정 기각
 - 기무사 사찰피해자 인권침해 진정 기각
- ② 인권옹호자 탄압관련 진정을 무기한 연장
- ③ 인권옹호자 직접 탄압
 - 2010년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위 농성시 단전, 난방중단. 끝.